

공고 소공동 2024- 18 호

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세칙 일부개정안

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세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. 별표 사용료 등 징수기준의 사용료를 10,000원 ~ 30,000원 차등 부과하고,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에 중구 주민등록자 감면을 명시한다. 세부사항은 신·구조문대비표와 같다.

부 칙

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

【별표】

사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기준

사용료 등 징수기준(중구조례 제10조 제3항 관련)

구 분	단 위	대 상	상한금액
사용료	1시간	다목적회의실, 사랑방 등	10,000원
수강료	월	프로그램 이용자 (레크리에이션, 생활체육, 일반강좌)	30,000원

※ 사용료 징수기준은 최초 1시간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시마다 50%를 가산한다.

※ 수강료 환불은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,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

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(중구조례 제10조 제5항 관련)

구 분	감면비율 (%)	대 상	비 고
사용료	100	·국가·공공 및 직능단체 등에서 공익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	
	50	·65세이상 노인 또는 13세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	
사용료 및 수강료	100	·국민기초생활수급자 / ·저소득 모·부자가정 ·소년·소녀가장 / ·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·등록된 장애인 / ·경로우대자(65세이상)	

개 정 안

【별표】

사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기준

사용료 등 징수기준(중구조례 제10조 제3항 관련)

구 분	단 위	대 상	상한금액
사용료	1시간	50㎡ 미만	10,000원
		50㎡ 이상 ~ 100㎡ 미만	15,000원
		100㎡ 이상 ~ 150㎡ 미만	20,000원
		150㎡ 이상 ~ 200㎡ 미만	25,000원
		200㎡ 이상	30,000원
수강료	월	프로그램 이용자 (레크리에이션, 생활체육, 일반강좌)	30,000원

- ※ 사용료 징수기준은 최초 1시간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시마다 50%를 가산한다.
- ※ 수강료 환불은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,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.
- ※ 가능한 많은 이용자의 대관을 위해 동일인(다수인의 동일 행사 포함) 월 2회 이내 대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.

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(중구조례 제10조 제5항 관련)

구 분	감면비율 (%)	대 상	비 고
사용료	100	•국가·공공 및 직능단체 등에서 공익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로 동장이 인정하는 경우	
	50	•65세이상 노인 또는 13세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로 동장이 인정하는 경우	
수강료	100	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(유공자증 또는 가족확인서 등 제출자에 한함)	중구 주민등록자 감면적용
		•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•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(소년·소녀가정 포함) •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모·부자 가정 •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(65세 이상) •다동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(막내 자녀 나이 18세까지) •서울 중구 토박이	

- ※ 수강료 감면은 중구 통합 1인 2강좌 이내를 원칙으로 함